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472호 2020년 9월 24일(목)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경상북도 조례 제4373호) ····· 8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4호) ····· 13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5호) ····· 20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6호) ····· 23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7호) ····· 24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8호) ····· 25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79호) ····· 29

○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0호) ····· 35

○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1호) ····· 39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2호) ····· 43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3호) ····· 45

○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4호) ····· 47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 ·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5호) ····· 50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6호) ····· 53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7호) ····· 56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8호) ····· 5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89호) ····· 60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90호) ····· 64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91호) ····· 69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92호) ····· 71

■ 규 칙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60호) ····· 76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2961호) ····· 103

■ 예 규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상북도 예규 제1558호) ····· 113

■ 고 시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327호) ····· 120

○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328호) ····· 131

○ 군위군 우보 나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329호) ····· 170

■ 공 고

○ 「경북 차세대 비면허대역 통신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2호) ····· 173

○ 「경북 차세대 비면허대역 통신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3호) ····· 174

○ 2020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5호) ····· 175

○ 기본측량실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7호) ····· 177

시 군

■ 고 시

○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0-175호) ····· 180

○ 경산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0-176호) ····· 183

○ 경산도시계획(중방지구 시가지조성(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0-177호) ····· 187

○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군 고시 제2020-80호) ····· 191

■ 공 고

○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김천시 공고 제2020-1910호) ····· 196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재 공람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0-941호) ····· 200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84호) ····· 206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85호) ····· 207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86호) ····· 208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0호) ····· 209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1호) ····· 210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6호) ····· 211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7호) ····· 212

■ 공 고

○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수시공개목록 공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6호) ····· 214

◈◈◈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3호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 산하기관 · 연구기관 ·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 · 산하기관 · 연구기관 ·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중앙정부 또는 도의 재원이 포함된 장비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 산하기관 · 연구기관 · 대학 등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적으로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2.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3.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 · 유통 ·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6.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7. 공동활용장비의 성능고도화 방안 수립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전담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활용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 ·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등 조사 ·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제8조의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조사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주관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은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 ·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파손 · 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전담기관과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불용처리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담당 국장과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실무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공공기관 · 산하기관 · 연구기관 · 대학 등의 장비담당 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장비 사용료) ①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4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자, 주민 및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 담당 실·국·본부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노사민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조체계 유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도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도가 주관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노사민정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 운영 지원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3.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4. 노사 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5.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6.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ㆍ연구 의뢰

7.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8.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펀드 사업

9. 그 밖의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행한 결정으로 본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5호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 · 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ㆍ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은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6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2025년 11월 4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7호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8호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 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79호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폭력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3. 여성폭력 위기상담과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지원사업
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이여성행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법원,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법률 및 수사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0호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
2. 기술검토수당: 1건당 20,000원
3.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일당 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1호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

2. 경북학숙 건립·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그밖에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진흥원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 조직·정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2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도”를 “제17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를 “및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군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3호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

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6조제1항 중 “문해교육협의”를 “문해교육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4호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북도 간행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 ·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5호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 ·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관리

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6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일 가정양립실현 등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공동경영협약 등) 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주여성 농어업인”을 “이주 여성농어업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중 “자문에 응하기”를 “자문을 받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7호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 · 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 · 화분 · 봉독 · 프로폴리스 · 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 ·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

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 · 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 · 증식 및 보호 ·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 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 · 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 · 부산물의 유통 · 판매

6.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8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89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숲을 말한다.
2. “학교숲 조성”이란 학교숲에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간이쉼터, 숲 안내판, 식물 이름표 등의 설치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 · 감독을 받는「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3.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교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경상북도 학교 용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숲 또는 산지의 수목식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일항쟁기를 비롯하여 과거 식재된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 학생 ·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을 포함한다)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확보 :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 ·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제7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시 · 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90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③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삭제〉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91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를 말한다)의 구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제4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 9. (현행과 같음) 10.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를 말한다)의 구입비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조례 제4392호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견된 공무원 포함”을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교직원을”을 “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중등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1. ----------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기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고기한) ① ---------- 3년 ----.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

현 행	개 정 안
	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관, 중등과장으로 한다.	2. ---------- 중등교육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규칙 제2960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명칭 등) 의용소방대의 명칭·정원 및 관할구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등) ①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정기모집을 상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의 임명 추천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임기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시·군별 남·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임명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의용소방대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119안전센터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119안전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119안전센터장은 제5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추천할 때에는 입대 후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장은 반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지 3년 이내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로 통지한다.

제5조(대장 등의 추천) ① 대장 및 부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임하고자 하는 대장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진술 등)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7조(의결 기한)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절차)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의용소방대의 명칭
2. 의결주문
3. 의결이유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0조(전담의용소방대)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운전자격자, 진압대원 등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익월 7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근무조에 편성되는 대원의 현장활동 능력강화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조 편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4. 근무 중 음주행위

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무점검은 소방본부장이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이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운영지도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에서 7년 이상 재직 하고 퇴직한 사람

제11조(지도·감독) 조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한 경우 소방서장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 훈련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을 받는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3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으로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장으로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
2.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적이 있는 의용

소방대원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게 국내 · 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의용소방대

2.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대원

3. 언론보도 등으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인 대원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실적이 우수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

제15조(재해보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6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기 및 표지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의 기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의용소방대 기 및 표지를 따른다.

제17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① 경상북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서기를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지역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지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서기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소방서연합회는 12월 10일, 도연합회는 12월 2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도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
2. 소방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소방서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추천 및 감사의 선출
2. 지역연합회 운영 및 제20조에 따른 시행세칙 정비

3. 회계감사 결과 보고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운영, 회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

순 번	소 속	성 명	현 직위	변경 직위	최초 임용일 (경력)	비 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직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소방서○○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 ○ 소 방 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

경상북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사직사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장전화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본인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장(부대장)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장의 직을 연임하려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안 건	(문서번호 : ○○○○○○ - ○○○. 시행일자 : ○○○○.○○.○○.)
의견내용	
제출서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청인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운영위원회 의결서

1.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2. 의결주문			
3. 이 유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간 사 (서명)

년 월 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소방서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청인

[별지 제12호서식]

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

일자	근무 시간	근 무 자			근 무 내 용	결 재 (대장)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인원		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119안전센터장 성명 :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	작성 및 확인		
	총무부장 (서무반장)	부대장	대 장

신청기간	20 . . . ~ 20 . . .			
신청인원	○○명			
청구금액	금0,000원			
번호	직위	성명	활동시간	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활 동 시 간

(뒷면)

번호	직위	성명	활동시간						
			합계	화재	구조·구급	순찰·대기	홍보활동	재난활동	기타활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활동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	작성 및 확인		
	총무부장 (서무반장)	부대장	대 장

일시		장소	
인원		장비	
구분	화재 〔 〕, 구조 〔 〕, 구급 〔 〕, 대기·순찰 〔 〕, 홍보 〔 〕, 봉사 〔 〕, 기타 〔 〕		
내용			

출동(활동) 인원

시 간	직 위	성 명	서 명	시 간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16호서식]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 장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관서

신 청 ← 경 유 (의용소방대장)
↓
접 수 (소방서)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소방서장)
↓
지 급 ← 확 정 (소방서장)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규칙 제2961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고지)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대원의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대장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통지 등)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은 장학금 지급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근거로 장학금액을 확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례 제8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대원 또는 대원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추가 선발)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8조(관리) 소방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1. 대원 인적사항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용소방대 경 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2. 장학생 후보자 인적사항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원과 관 계
학교 학과 (학년)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학생에 선발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1. 재학증명서 1부

2. 보호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

연 번	학 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교 학과(부) 학년		(남, 여)	
	학교 학과(부) 학년		(남, 여)	
	학교 학과(부) 학년		(남, 여)	
	학교 학과(부) 학년		(남, 여)	
	학교 학과(부) 학년		(남, 여)	
	학교 학과(부) 학년		(남, 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첨부 장학금신청서(첨부물 포함) 각 1부

년 월 일

○○의용소방대장 성명 인

○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 장학생 인적사항

· 재학사항: 학교 학과(부) 학년

· 성 명: (남, 여)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년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1. 납입영수증 등(수업료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과(부) 학년

○ ○ ○

위 학생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 소방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명, 원)

구분 / 대명	계		고 등 학 생		대 학 생	
	장학생	지급액	장학생	지급액	장학생	지급액
계						
○○대						
○○대						
○○대						
○○대						
○○대						

[별지 제6호서식]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장학금 지급명단

(0000년)

순번	소속	대원명 (성별)	장학생명 (성별)	학교명(학과)	지급액(원)			비고
					계	1학기	2학기	
계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 예규 제1558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2. 중 “【별표1】과 같이 평정단위별로”를 “평정단위별로”로 한다.

Ⅱ. 3. 근무성적평정 흐름도 중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한다.

Ⅱ. 5.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성과자에 대한 평정우대 제도 운영

○ 업무성과와 수행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선정하여 최고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특별성과자 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특별성과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특별성과자 선발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및 기준은 정기평정 전 수

립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Ⅱ. 5. 다. 1) 중 “관찰결과 및 근무성적평정기준 선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관찰결과”로 한다.

Ⅱ. 5. 아. 1) 중 경상북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부분의 위원회 기능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회 기능

• 실·국별, 등급별, 분포비율 조정

• 근무성적평정 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결정

• 실적 가산점 부여 신청 사항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심사·결정

•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관리 등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항의 심의, 결정

Ⅲ. 4.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Ⅳ. 3. 가., 다. 및 라. 중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를 각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한다.

Ⅳ. 3. 나.를 삭제하고, 다. 및 라.를 각각 나. 및 다.로 한다.

Ⅴ. 2. 가.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

구분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최근 4년	25,25,25,25퍼센트
6급, 연구·지도사	최근 3년	34,33,33퍼센트
7급	최근 2년	50,50퍼센트
8급 이하	최근 1년	100퍼센트

※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같은 비율로 함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중 “경상북도실적가산점심사위원장”을 “경상북도근무성적평정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Ⅴ. 2. 가.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에 관한 특례) Ⅴ. 2. 가. 근무성적 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및 비율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반영기간	반영비율(평정 단위기간별)
5급	최근 3년 6개월	15,15,14,14,14,14,14퍼센트
6급, 연구·지도사	최근 2년 6개월	20,20,20,20,20퍼센트
7급	최근 2년	25,25,25,25퍼센트
8급 이하	최근 1년	50,50퍼센트

※ 각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수 반영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같은 비율로 함

【별표 2】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

가산점 항목	부여 기준	배점	부여 요건
1. 중앙단위 표창수상	1-1 중앙단위 표창을 수상한 사람 • 훈장 • 포장	 1.0점 0.5점	○ 관련 증빙자료 첨부
	1-2 전국단위 소관업무평가 결과 최우수상(1위)을 수상한 사람	0.5점	○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담당, 담당자) ○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 첨부
2.제안상 수상	2-1 중앙우수제안을 수상한 사람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2.0점 1.5점 1.0점 0.5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라 특별승진한 사람은 가산점제외
	2-2 경상북도 창안상을 수상한 사람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 입 선	 1.0점 0.7점 0.5점 0.3점 0.2점 0.1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산점제외
3.특허권 취득 인허가 대상 수상	3-1 직무관련 특허권 취득 • 단 독 • 공 동	 1.0점 0.5점	○ 특허권자가 경상북도지사이고국내특허에 한함. 개인명의 제외 ○ 특허권 취득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평정시 신청한 것만 인정

가산점 항목	부여 기준	배점	부여 요건
	3-2 인허가 대상을 수상한 사람 • 대 상 • 최우수 • 우 수	0.3점 0.2점 0.1점	○ 경상북도 인허가대상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수상한 경우 ○ 새마을봉사과 관련서류 통보
4. 업무추진 탁월	4-1 국·도정 역점과제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업무추진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0점 이내	○ 업무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평정 단위기간 내 6개월 이상 해당업무 추진 ○ 평가등급 및 계급별 차등점수 부여 ○ 세부 부여기준 별도 수립 안내
	4-2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여 예산성과금 받은 사람 • 성과금 100만원당 0.1점	1.0점 이내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그 실적이 인정된 경우 ○ 예산담당관 관련서류 통보
	4-3 경상북도 MVP 공무원	1.0점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MVP공무원으로 선정한 경우 ○ 정책기획관 관련서류 통보
	4-4 고질적인 집단·장기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0점 이내	○ 6개월 이상 장기화된 민원 해결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평정기간 전부터 연속된 경우최종 심사 시 인정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 1인)
	4-5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실적 유공공무원	0.5점 이내	○ 평가지표,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가산점기준(평정부서 사전협의)에 따라 부여 ○ 정책기획관 관련서류 통보

가산점 항목	부여 기준	배점	부여 요건
5.격무부서 (팀) 근무	5-1 사전 지정된 격무부서(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점 이내	○ 격무부서(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1개월마다 0.05점 가산
6.대구경북 상생과제 추진 우수	6-1 대구경북상생과제 추진 유공공무원	0.2점 이내	○ 과제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1년 이상 해당업무 추진 ○ 정책기획관 관련 서류 통보
7.적극행정 추진 우수	7-1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	0.5점 이내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기준(평정부서 사전 협의)에 따라 부여 ○ 법무혁신담당관실 관련 서류 통보
8.기 타	8-1 기타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0.5점 이내	○ 일상적인 업무추진실적은 가산점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경상북도 고시 제2020-32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보2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123-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10년 준공
강사3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683-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10년 준공
송내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858-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6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유계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785-65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1년 준공
갑을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705-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88년 준공
라원IC교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707-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청령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720-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갑산육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181-3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오류교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15-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금장IC교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23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석촌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1009-77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10년 준공
회리교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1659-18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1년 준공
장항3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45-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4년 준공
장항2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 415-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4년 준공
호암1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88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제2호암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307-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4년 준공
안동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51-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9년 준공
와읍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 792-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5년 준공
금송2교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95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4년 준공
감문교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305-59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9년 준공
용호교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1202-20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5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대방교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1257-115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88년 준공
매실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 4-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농소교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1034-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5년 준공
습례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83-7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제2구봉교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746-87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4년 준공
오로교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971-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0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고지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467-9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7년 준공
부산교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 193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10년 준공
유천소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1356-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85년 준공
임포교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274-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6년 준공
신한2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257-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4년 준공
강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67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7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금락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74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0년 준공
파전교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508-3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9년 준공
이화교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이화길 105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83년 준공
보골교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산 156-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3년 준공
연계교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727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5년 준공
제2수서교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663-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3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광현교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 1100-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제2무암교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1037-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3년 준공
동곡교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양지리 918-2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10년 준공
일연교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10년 준공
녹명교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녹명리 798-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0년 준공
경지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628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6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화죽교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화죽리 705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5년 준공
신성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921-8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8년 준공
말미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763-3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8년 준공
봉두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산 293-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8년 준공
창천제1교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1242-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5년 준공
송계교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 995-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본리교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988-4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1년 준공
전동2교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1024-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3년 준공
광암교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92년 준공
울릉대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94-6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81년 준공
수층교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 197-1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1년 준공
남양교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619-8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2009년 준공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무릉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60-3	남부건설사업소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1978년 준공

경상북도 고시 제2020-328호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조성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3조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고령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지역개발사업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63-1번지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1,242,601㎡

○ 변경 : 1,241,861㎡ (감 740㎡)

※ 구역 면적 변경(철탑부지 및 진입도로의 가감속차로 부지 내 미이용 필지 제척)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적인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부응하여 컨트리클럽 및 연수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개발을 선도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

나. 구역지정 및 지역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0년 11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4.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변경)

가. 성명(변경없음)

○ 법인명 : (주)두강건설

○ 대표자 : 대표이사 이 정 익

나. 주소(변경)

○ 기정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 변경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75-115

다. 사업 시행방식(변경없음)

○ 민간개발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 、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지구별	총면적	
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	티	11,621	9,052	0.88	0.73	61개소 → 75개소
		그린	16,012	18,300	1.77	1.47	36개소 → 30개소
		벙커	5,225	6,734	0.65	0.54	73개소 → 70개소
		페어웨이	121,245	111,416	10.80	8.98	
		러프	120,413	107,765	10.45	8.68	
		연습그린	633	711	0.07	0.06	1개소 → 2개소
		소계	275,149	253,978	24.62	20.46	
	건축시설	클럽하우스	8,383	8,321	0.81	0.67	1개동/지상 2층, 지하 1층
		티하우스	513	230	0.02	0.02	1개동/지상 1층
		소계	8,896	8,551	0.83	0.69	
	기반시설	저류지	36,541	42,422	4.11	3.42	
		진입도로	14,643	10,752	1.04	0.87	폭:10m
		카트도로	24,288	31,642	3.07	2.55	폭:2.4m, 길이:10,120m
		교량	534	306	0.03	0.02	
		오수처리장	176	171	0.02	0.0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지구별	총면적	
		주차장	11,569	11,609	1.13	0.93	
		소계	87,751	96,902	9.40	7.80	
	녹지	조성녹지	273,858	277,712	26.93	22.36	
		원형녹지	394,438	394,137	38.22	31.74	
		소계	668,296	671,849	65.15	54.10	
	소계		1,040,092	1,031,280	100.00	83.05	
주거시설용지	주거시설	주거용지	45,835	45,835	26.24	3.69	
	기반시설	도로	21,197	21,197	12.15	1.70	
		공원	9,762	9,762	5.59	0.79	
		커뮤니티센터	2,923	2,923	1.67	0.24	
		관리사무소	130	130	0.07	0.01	
		공용주차장	738	738	0.42	0.06	
		저류지	530	530	0.30	0.04	
		소계	35,280	35,280	20.20	2.84	
	녹지	조성녹지	22,242	22,242	12.73	1.79	
		원형녹지	71,310	71,310	40.83	5.74	
		소계	93,552	93,552	53.56	7.53	
	소계		174,667	174,667	100.00	14.06	
특정시설용지	연수시설	커뮤니티센터	1,752	1,752	4.88	0.14	
		에듀케이션센터	2,131	2,131	5.93	0.17	
		운동장	1,231	1,231	3.43	0.10	
		소계	5,114	5,114	14.24	0.41	
	기반시설	도로	2,627	6,673	18.58	0.54	
		주차장	727	727	2.02	0.06	
		소계	3,354	7,400	20.60	0.60	
	녹지	조성녹지	13,601	15,842	44.12	1.27	
		원형녹지	5,773	7,558	21.04	0.61	
		소계	19,374	23,400	65.16	1.88	
	소계		27,842	35,914	100.00	2.89	
합 계			1,242,601	1,241,861	-	100.00	

※ 사업계획 변경(코스계획,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계획(변경)

○ 생활용수량 산정(변경)

구 분	오수발생량(㎥/일)		오수전환율	생활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체육시설용지	180.14	181.82	0.88	204.70	206.61	
주거시설용지	64.06	64.06	0.88	72.80	72.80	
특정시설용지	51.87	51.87	0.88	58.94	58.94	
계	296.07	297.75	-	336.44	338.35	

○ 관개용수 소요량 산정(변경)

구 분	그린(연습그린)		티		페어웨이		러프		잡용수		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관개면적(㎡)	16,645	19,011	11,621	9,052	121,245	111,416	120,413	107,765	-	-	269,924	247,244
단위사용량(㎜/일)	10.0		5.5		4.3		5.0		-		-	
1일 사용량(㎥)	166	190	64	50	521	479	602	539	135	126	1,488	1,384
사 용 빈 도	1회/일		1회/2일		1회/3일		1회/3일		1회/7일		-	
살 수 기 간	3월~10월		4월~9월		4월~9월		4월~9월		1월~12월		-	
연간빈도(일)	245		92		61		61		52		-	
연간필요수량(㎥/년)	40,670	46,577	5,888	4,580	31,781	29,224	36,722	32,868	7,020	6,541	122,081	119,791

주 : 잡용수 - 티, 그린, 페어웨이, 러프 사용량의 10% 적용

나. 우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다. 오수처리계획(변경)

○ 오수발생량 산정

구 분		연면적(㎡)		계획 인구 (인)	오수 발생 원단위	오수발생량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체육시설용지	클럽하우스	5,318.19	5,103.99	-	30ℓ /㎡	159.55 ㎥/일	153.12 ㎥/일	샤워실 제외
	샤워시설	342.60	513.06	-	46ℓ /㎡	15.76 ㎥/일	23.60 ㎥/일	
	티하우스	161.10	170.04	-	30ℓ /㎡	4.83 ㎥/일	5.10 ㎥/일	
주거시설용지	주거시설	17,210.00	17,210.00	302	170ℓ /인	51.34 ㎥/일	51.34 ㎥/일	
	관리사무소	130.00	130.00	-	15ℓ /㎡	1.95 ㎥/일	1.95 ㎥/일	
	주민공동시설	860.00	860.00	-	12~15ℓ /㎡	10.77 ㎥/일	10.77 ㎥/일	
특정시설용지	에듀케이션센터	3,511.37	3,511.37	-	9ℓ /㎡	31.60 ㎥/일	31.60 ㎥/일	
	커뮤니티센터	2,251.77	2,251.77	-	9ℓ /㎡	20.27 ㎥/일	20.27 ㎥/일	
계		29,785.03	29,750.23	302	-	296.07 ㎥/일	297.75 ㎥/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가. 사업비 산출내역(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비고
			2011~2018	2019	2020	
합 계		108,023	13,386	18,628	76,009	
골프장 조성 공사	소 계	55,033	1,639	5,208	48,186	
	토 공 사	17,689	-	531	17,158	
	배 수 공 사	3,440	-	585	2,855	
	포 장 공 사	3,083	-	832	2,251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비고
			2011~2018	2019	2020	
	조형공사	679	-	-	679	
	잔디공사	2,636	-	-	2,636	
	G·T·B 공사	2,840	-	-	2,840	
	POND 공사	1,794	-	-	1,794	
	관개용수공사	2,092	-	-	2,092	
	부대공사	1,829	-	183	1,646	
	구조물공사	1,273	-	-	1,273	
	조경공사	4,517	-	-	4,517	
	옥외공사	2,170	-	-	2,170	
	기타경비	10,991	1,639	3,077	6,275	
주택 및 특정시설 공사 (부지매입비 포함)		52,990	11,747	13,420	27,823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비 (백만원)	공공투자 (백만원)	민간투자 (백만원)	비 고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지역개발사업	108,023	-	108,023	자체자금으로 충당

9. 보상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10.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변경)

가. 편입토지조서(변경) : ※별첨1

나. 지장물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11. 사업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2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변경없음)

○ 법인명 : (주)두강건설

○ 대표자 : 대표이사 이 정 익

나. 주소(변경)

○ 기정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 변경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75-115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고령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지역개발사업구역

나. 목적(변경없음)

○ 종합적인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부응하여 컨트리클럽 및 연수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개발을 선도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63-1번지 일원

라. 면적(변경)

○ 기정 : 1,242,601㎡

○ 변경 : 1,241,861㎡ (감 740㎡)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0년 11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1구역지정(변경) 사항의 8. 항목과 동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

※ 1구역지정(변경) 사항의 10. 항목과 동일

7.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2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나. 이해관계인은 아래 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도시재생과 (☏ 054-880-3943)

○ 고령군 도시건축과 (☏ 054-950-6703)

○ (주)두강건설 (☏ 054-950-5000)

※ [별첨1] :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기정				1,245,899	1,242,601			
	변경				1,245,159	1,241,861			
1		다산면 벌지리	산 33 -1	임	9,084	9,084	파평윤씨판도공파 판관공논공종회	달성군 논공면 하동 354	
2		다산면 벌지리	산 34	임	893	893	이종철	대구시 서구 내당동 1066	
3		다산면 벌지리	산 35 -1	임	11,461	11,461	이종열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72 화성파크스위트 102-1007	
4		다산면 벌지리	산 35 -2	임	2,350	2,350	이종열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72 화성파크스위트 102-1007	
5		다산면 벌지리	산 36	임	73,388	73,388	이종주 외 1인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66	
6		다산면 벌지리	산 39	임	1,190	1,190	성주이씨문열공파 종중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012	
7		다산면 벌지리	산 40 -1	임	54,347	54,34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		다산면 벌지리	산 41	임	16,661	16,66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		다산면 벌지리	산 56 -1	임	4,741	4,74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		다산면 벌지리	산 57 -3	임	6,976	6,97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1		다산면 벌지리	산 58	임	18,248	18,24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		다산면 벌지리	산 59 -2	임	3,071	3,07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		다산면 벌지리	산 61 -1	임	21,337	21,337	전의이씨반학정공파종중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93	
14	기정	다산면 벌지리	산 62 -2	임	248,604	248,604	주식회사두강건설 외 1인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산62-4번지, 산62-5번지분할
	변경				248,290	248,290	주식회사두강건설		
15	기정	다산면 벌지리	산 62 -4	임	-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산62-2에서 분할
	변경				157	157			
16	기정	다산면 벌지리	산 62 -5		-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산62-2에서 분할
	변경			임	157	157			
17		다산면 벌지리	산 63 -5	임	269,249	269,24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8		다산면 벌지리	산 63 -2	임	11,504	11,50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기정	다산면 벌지리	산 63 -3	임	220	220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제외
	변경				-	-			
19		다산면 벌지리	산 64	임	1,587	1,58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0		다산면 벌지리	산 65	임	198	19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1		다산면 벌지리	산 66	임	397	3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2		다산면 벌지리	산 67	임	2,777	2,77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3		다산면 벌지리	산 68	임	1,983	1,98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4		다산면 벌지리	산 69	임	595	59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5		다산면 벌지리	산 70	임	1,190	1,19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6		다산면 벌지리	산 71	임	298	29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7		다산면 벌지리	산 72	임	397	3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8		다산면 벌지리	산 73	임	397	3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29		다산면 벌지리	산 74	임	694	69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0		다산면 벌지리	산 80	임	298	29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기정	다산면 벌지리	산 81 -1	임	142	142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제외
	변경				-	-			
31		다산면 벌지리	산 81 -2	임	342,144	342,14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32		다산면 벌지리	산 82	임	1,190	1,19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3		다산면 벌지리	산 83	임	13,884	13,88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4		다산면 벌지리	산 84	임	397	3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5		다산면 벌지리	산 85	임	496	49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6		다산면 벌지리	산 86	임	694	69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7		다산면 벌지리	산 88	임	1,983	1,98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8		다산면 벌지리	산 87	임	6,410	3,11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39		다산면 벌지리	산 89	임	397	3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0		다산면 벌지리	산 90	임	298	29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기정	다산면 벌지리	산 92 -4	임	305	305	김기천 외 5인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5길 37-3	제외
	변경				-	-			
41		다산면 벌지리	산 143 -1	도	4,093	4,09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2		다산면 벌지리	산 144	구	231	23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3		다산면 벌지리	산 145	구	331	33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44		다산면 벌지리	산 147 -1	구	123	12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5		다산면 벌지리	산 168	구	165	16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6		다산면 벌지리	산 169	구	87	8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7		다산면 벌지리	산 170	구	16	1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8		다산면 벌지리	산 171 -1	도	2,149	2,14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49		다산면 벌지리	산 172	구	727	72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50		다산면 벌지리	산 173	도	1,422	1,42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51		다산면 벌지리	산 174	구	595	59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52		다산면 벌지리	산 175	구	397	3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53		다산면 벌지리	산 176	구	92	9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54		다산면 벌지리	718	전	218	21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55		다산면 벌지리	719	답	261	26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56		다산면 벌지리	720	답	863	86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산개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2길 13	
57		다산면 벌지리	721	전	142	142	김인개		미등기
58		다산면 벌지리	722	답	555	555	김수삼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7길 77, 101동 305호	
59		다산면 벌지리	723 -1	답	2,106	2,106	김수삼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7길 77, 101동 305호	
60		다산면 벌지리	723 -2	답	985	98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다산개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2길 13	
61		다산면 벌지리	723 -3	답	691	69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62		다산면 벌지리	724	답	823	823	김수삼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7길 77, 101동 305호	
63		다산면 벌지리	725	전	1,190	1,19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64		다산면 벌지리	726	전	483	48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65		다산면 벌지리	727	묘	1,408	1,40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66		다산면 벌지리	728	전	641	64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67		다산면 벌지리	729	전	149	14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68		다산면 벌지리	730	전	932	93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69		다산면 벌지리	731	답	1,382	1,38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0		다산면 벌지리	732 -1	전	918	91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1		다산면 벌지리	733 -1	답	1,989	1,98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2		다산면 벌지리	736 -1	답	1,403	1,40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3		다산면 벌지리	737	답	129	12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4		다산면 벌지리	738	전	456	45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5		다산면 벌지리	739	전	1,455	1,45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6		다산면 벌지리	740	구	112	11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7		다산면 벌지리	741 -1	답	173	17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78		다산면 벌지리	1141 -2	전	214	21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79		다산면 벌지리	1142 -2	전	116	116	주식회사두강건설 외 1인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기정	다산면 벌지리	1144 -2	전	73	73	도정숙 외 1인	대구 중구 동산동 523	제외
	변경				-	-			
80		다산면 벌지리	1146 -2	임	402	40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1		다산면 벌지리	1146 -3	임	363	36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2		다산면 벌지리	1147 -2	전	74	7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3		다산면 벌지리	1147 -3	전	271	27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4		다산면 벌지리	1148 -1	임	334	33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5		다산면 벌지리	1148	묘	909	90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6		다산면 벌지리	1149	전	602	60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7		다산면 벌지리	1167	전	1,220	1,22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8		다산면 벌지리	1225 -1	임	22	2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89		다산면 벌지리	1231 -2	유	2,773	2,77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0		다산면 벌지리	1231 -3	답	2,863	2,86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91		다산면 벌지리	1231 -4	답	1,931	1,93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2		다산면 벌지리	1232	전	264	26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3		다산면 벌지리	1233	전	945	94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4		다산면 벌지리	1234	답	1,031	1,03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5		다산면 벌지리	1235	답	1,045	1,04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6		다산면 벌지리	1236	답	605	60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7		다산면 벌지리	1237	답	922	92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8		다산면 벌지리	1238	전	883	88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99		다산면 벌지리	1239 -1	전	341	34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0		다산면 벌지리	1239	전	710	71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1		다산면 벌지리	1240	전	251	25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2		다산면 벌지리	1241	임	1,388	1,38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3		다산면 벌지리	1242	답	1,342	1,34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04		다산면 벌지리	1243	답	747	74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5		다산면 벌지리	1244	답	1,521	1,52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6		다산면 벌지리	1245	답	992	99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7		다산면 벌지리	1246 -1	답	1,372	1,37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8		다산면 벌지리	1246 -2	유	641	64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09		다산면 벌지리	1247	답	2,102	2,10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0		다산면 벌지리	1248 -1	전	916	91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1		다산면 벌지리	1248 -2	묘	294	29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2		다산면 벌지리	1249	임	959	95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3		다산면 벌지리	1250	답	724	72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4		다산면 벌지리	1251	묘	298	29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5		다산면 벌지리	1252	답	585	58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6		다산면 벌지리	1253	전	93	9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17		다산면 벌지리	1254	임	866	86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8		다산면 벌지리	1255	답	840	84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19		다산면 벌지리	1256	임	1,772	1,77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0		다산면 벌지리	1257	묘	195	19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1		다산면 벌지리	1258	묘	886	88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2		다산면 벌지리	1259 -1	전	659	65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3		다산면 벌지리	1259	전	597	59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4		다산면 벌지리	1260	전	1,283	1,28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5		다산면 벌지리	1261 -1	전	304	30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6		다산면 벌지리	1261 -2	임	337	33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7		다산면 벌지리	1262	전	112	11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8		다산면 벌지리	1263	전	162	16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29		다산면 벌지리	1264	전	317	31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30		다산면 벌지리	1265 -1	구	298	29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1		다산면 벌지리	1265 -2	전	291	29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2		다산면 벌지리	1266	답	899	89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3		다산면 벌지리	1267	임	1,203	1,20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4		다산면 벌지리	1268	임	96	9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5		다산면 벌지리	1269 -1	구	60	6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6		다산면 벌지리	1269 -2	전	301	30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7		다산면 벌지리	1270	답	403	40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8		다산면 벌지리	1271 -1	구	139	13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39		다산면 벌지리	1271 -2	전	1,577	1,57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0		다산면 벌지리	1272 -1	구	446	44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1		다산면 벌지리	1272 -2	전	774	77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2		다산면 벌지리	1273	묘	238	23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43		다산면 벌지리	1274	묘	238	23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4		다산면 벌지리	1275	임	43	4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5		다산면 벌지리	1276	답	807	80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6		다산면 벌지리	1277	답	774	77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7		다산면 벌지리	1278	묘	66	6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48	기정	다산면 벌지리	1279	전	1,600	1,600	주식회사두강건설 외 1인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변경						주식회사두강건설		
149		다산면 벌지리	1280 -1	구	106	10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0		다산면 벌지리	1280 -2	전	615	61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1		다산면 벌지리	1281	전	99	9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2		다산면 벌지리	1282	답	1,831	1,83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3		다산면 벌지리	1283	답	932	93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54		다산면 벌지리	1284	임	1,329	1,32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5		다산면 벌지리	1285	임	2,883	2,88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6		다산면 벌지리	1286	답	1,481	1,48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7		다산면 벌지리	1287	답	1,461	1,46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8		다산면 벌지리	1288	전	172	17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59		다산면 벌지리	1289	답	1,623	1,62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0		다산면 벌지리	1290	전	69	6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1		다산면 벌지리	1291	전	122	12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2		다산면 벌지리	1292	답	76	76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3		다산면 벌지리	1332 -5	구	8,561	8,56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4		다산면 벌지리	1332 -6	구	378	37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5		다산면 벌지리	1332 -7	구	280	280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6		다산면 벌지리	1332 -8	구	55	55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67		다산면 벌지리	1335 -1	구	2,382	2,382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8		다산면 벌지리	1335 -2	구	1	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69		다산면 벌지리	1339 -1	도	469	469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70		다산면 벌지리	1339 -2	도	343	34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71		다산면 벌지리	1341 -1	도	28	28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72		다산면 벌지리	1342	구	4,717	4,717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73		다산면 벌지리	1343 -1	구	581	581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74		다산면 벌지리	1344	도	453	453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1	
175		다산면 벌지리	1345	도	764	764	주식회사두강건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162	

※ [별첨2] :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지역개발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42,601	-	1,242,601	100.0	※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 - 계획관리지역 : 1,241,861㎡ ※ 구역외 - 농림지역 : 362㎡ - 계획관리지역 : 378㎡
관리지역	계	1,242,601	감) 362	1,242,239	99.9	
	계획관리지역	1,242,601	감) 362	1,242,239	99.9	
농림지역		-	증) 362	362	0.1	

※ 사용중인 진입도로의 가감속차로 부지 내 미이용 필지 제척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사항(감 378㎡)은 용도지역의 면적변경은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다산면 벌지리 일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362	80%	■ 한국전력공사 철탑 부지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다1	다산 샤인힐 컨트리 클럽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다산면 벌지리 일원		1,242,601	감) 740	1,241,861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 8.22)	
			관광 휴양형	다산면 벌지리 산63-1번지 일원	다산면 벌지리 산63-5번지 일원	1,067,934	감) 740	1,067,194		
			주거형	다산면 벌지리 산39번지 일원		174,667	-	174,66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다1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A=1,242,601㎡ → 1,241,861㎡ (감 740㎡)	■ 한국전력공사 철탑 부지 및 사용중인 진입도로의 가감속차로 부지 내 미이용 필지의 제척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용도구획		합 계					비 고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구역별	총면적	
계		1,242,601	감) 740	1,241,861		100.00	
관광 휴양형	소 계	1,067,934	감) 740	1,067,194	100.00	85.94	
	체육시설용지	357,153	증) 319,751	676,904	63.43	54.52	티, 그린, 벙커, 페어웨이, 러프, 연습그린,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저류지, 교량, 카트도로, 오수처리장, 주차장(클럽하우스), 녹지, 운동장

용도구획		합 계					비 고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구역별	총면적	
	관광휴양 시설용지	5,114	감) 1,231	3,883	0.36	0.31	커뮤니티센터, 에듀케이션센터
	공공시설용지	17,997	감) 57	17,940	1.68	1.44	도로, 주차장
	녹지용지	687,670	감) 319,203	368,467	34.53	29.67	조성녹지, 원형녹지
주거형	소 계	174,667	-	174,667	100.00	14.06	
	주거용지	45,835	-	45,835	26.24	3.69	151세대
	근린생활 시설용지	-	증) 3,053	3,053	1.75	0.25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공공시설용지	35,280	감) 13,345	21,935	12.56	1.77	도로, 공용주차장
	녹지용지	93,552	증) 10,292	103,844	59.45	8.35	공원, 조성녹지, 원형녹지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3	3,849	38,467	7	2,538	26,569	6	1,311	11,898	-	-	-
	변경	13	3,849	38,410	7	2,538	26,512	6	1,311	11,898	-	-	-
소로	기정	13	3,849	38,467	7	2,538	26,569	6	1,311	11,898	-	-	-
	변경	13	3,849	38,410	7	2,538	26,512	6	1,311	11,898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8	10~11	국지도로	1,702	다산면 벌지리 114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41번지	일반도로	-	고령군 고시 제2016-462호 (16.05.12)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18	10~11	국지도로	1,702	다산면 벌지리 114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41번지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다1	11	국지도로	274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1	다2	11	국지도로	105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35-1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1	다3	10.5	특수도로	46	다산면 벌지리 722번지	다산면 벌지리 1342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1	다4	10.5	특수도로	46	다산면 벌지리 1342번지	다산면 벌지리 1342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1	다5	11	집산도로	319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61-1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1	다6	11	국지도로	46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40-1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2	다2	9	국지도로	728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61-1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2	다4	9	국지도로	105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35-1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2	다5	9	국지도로	104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35-1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2	다8	8	특수도로	43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6-216호 (2016.8.22)	
기정	소로	2	다9	8	특수도로	23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36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9-353호 (2019.11.11)	
기정	소로	2	다10	9	국지도로	308	다산면 벌지리 산61-1번지	다산면 벌지리 산62-2번지	일반도로	-	경상북도 고시 제2019-353호 (2019.11.11)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8호선	소로1-18호선	■ 선형변경	■ 골프코스 변경에 따른 일부 선형변경(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나)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형(변경)

가) 체육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경	면 적(㎡) 변경후	
합 계			695,062	감) 18,158	676,904	-	695,062	감) 18,158	676,904	
A1		A	695,062	감) 18,158	676,904	벌지리 산63-5번지	693,831	감) 35,161	658,670	
A2						벌지리 산36번지	1,231	-	1,231	농구장, 테니스장
A3						벌지리 산57-3번지	-	증) 17,003	17,003	A1에서 분리

나)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라) 녹지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5,635	증) 2,832	368,467	6개소 → 7개소	365,635	증) 2,832	368,467	
D1	D	344,287	증) 782	345,069	벌지리 산63-5번지	344,287	증) 782	345,069	원형녹지
D2		1,975	감) 190	1,785	벌지리 산41번지	1,975	감) 190	1,785	원형녹지
D3		1,299	-	1,299	벌지리 산36번지	1,299	-	1,299	원형녹지
D4		4,473	-	4,473	벌지리 산36번지	4,473	-	4,473	원형녹지
D5		10,787	-	10,787	벌지리 산36번지	10,787	-	10,787	조성녹지
D17		2,815	-	2,815	벌지리 산36번지	2,815	-	2,815	조성녹지
D18		-	증) 2,239	2,239	벌지리 산40-2번지		증) 2,239	2,239	조성녹지

2) 주거형(변경)

가) 주거시설용지 → 주거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5,835	-	45,835	151필지	45,835	-	45,835	
E1-1	E1	3,846	-	3,846	벌지리 산40-1번지	308	-	308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1-2					벌지리 산40-1번지	311	-	311	
E1-3					벌지리 산40-1번지	306	-	306	
E1-4					벌지리 산40-1번지	306	-	306	
E1-5					벌지리 산40-1번지	305	-	305	
E1-6					벌지리 산40-1번지	308	-	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E1-7					벌지리 산40-1번지	311	-	311	
E1-8					벌지리 산40-1번지	315	-	315	
E1-9					벌지리 산40-1번지	336	-	336	
E1-10					벌지리 산40-1번지	336	-	336	
E1-11					벌지리 산40-1번지	335	-	335	
E1-12					벌지리 산40-1번지	369	-	369	
E2-1					벌지리 산36번지	322	-	322	
E2-2					벌지리 산36번지	326	-	326	
E2-3					벌지리 산36번지	315	-	315	
E2-4	E2	6,152	-	6,152	벌지리 산36번지	300	-	300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2-5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2-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2-7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2-8					벌지리 산36번지	303	-	303	
E2-9					벌지리 산40-1번지	304	-	304	
E2-10					벌지리 산40-1번지	308	-	308	
E2-11					벌지리 산40-1번지	308	-	308	
E2-12					벌지리 산40-1번지	308	-	308	
E2-13					벌지리 산40-1번지	311	-	311	
E2-14	E2	6,152	-	6,152	벌지리 산36번지	255	-	255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2-15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E2-16					벌지리 산36번지	324	-	324	
E2-17					벌지리 산36번지	323	-	323	
E2-18					벌지리 산36번지	282	-	282	
E2-19					벌지리 산36번지	310	-	310	
E2-20					벌지리 산36번지	324	-	324	
E3-1					벌지리 720번지	308	-	308	
E3-2	E3	2,150	-	2,150	벌지리 720번지	308	-	308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3-3					벌지리 721번지	308	-	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E3-4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3-5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3-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3-7					벌지리 산36번지	302	-	302	
E4-1	E4	4,283	-	4,283	벌지리 산35-1번지	301	-	301	분할 또는 병합 금지
E4-2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E4-3					벌지리 1342번지	308	-	308	
E4-4					벌지리 1342번지	308	-	308	
E4-5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4-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4-7					벌지리 산36번지	301	-	301	
E4-8					벌지리 산36번지	301	-	301	
E4-9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4-10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4-11					벌지리 723-3번지	308	-	308	
E4-12					벌지리 723-3번지	308	-	308	
E4-13					벌지리 산35-1번지	307	-	307	
E4-14					벌지리 산35-1번지	301	-	301	
E5-1	E5	4,283	-	4,283	벌지리 산35-1번지	301	-	301	분할 또는 병합 금지
E5-2					벌지리 723-2번지	308	-	308	
E5-3					벌지리 723-2번지	308	-	308	
E5-4					벌지리 723-2번지	308	-	308	
E5-5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5-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5-7					벌지리 산36번지	301	-	301	
E5-8	E5	4,283	-	4,283	벌지리 산36번지	301	-	301	분할 또는 병합 금지
E5-9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5-10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5-11					벌지리 723-1번지	308	-	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E5-12					벌지리 723-1번지	308	-	308	
E5-13					벌지리 723-1번지	307	-	307	
E5-14					벌지리 산35-1번지	301	-	301	
E6-1					벌지리 723-1번지	308	-	308	
E6-2					벌지리 723-1번지	308	-	308	
E6-3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6-4	E6	2,142	-	2,142	벌지리 산36번지	301	-	301	
E6-5					벌지리 723-1번지	308	-	308	
E6-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6-7					벌지리 산36번지	301	-	301	
E7-1					벌지리 산62-2번지	317	-	317	
E7-2					벌지리 산62-2번지	288	-	288	
E7-3					벌지리 산62-2번지	288	-	288	
E7-4					벌지리 산62-2번지	280	-	280	
E7-5					벌지리 산62-2번지	292	-	292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7-6	E7	2,881	-	2,881	벌지리 산62-2번지	281	-	281	
E7-7					벌지리 산62-2번지	281	-	281	
E7-8					벌지리 산62-2번지	280	-	280	
E7-9					벌지리 산62-2번지	280	-	280	
E7-10					벌지리 산62-2번지	294	-	294	
E8-1					벌지리 산61-1번지	322	-	322	
E8-2					벌지리 산61-1번지	322	-	322	
E8-3					벌지리 산61-1번지	322	-	322	
E8-4					벌지리 산61-1번지	305	-	305	분할 또는 합병 금지
E8-5	E8	7,094	-	7,094	벌지리 산61-1지	305	-	305	
E8-6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E8-7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E8-8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E8-9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E8-10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E8-11					벌지리 산36번지	305	-	305	
E8-12					벌지리 724번지	305	-	305	
E8-13					벌지리 724번지	312	-	312	
E8-14					벌지리 산35-1번지	323	-	323	
E8-15					벌지리 산35-1번지	282	-	282	
E8-16					벌지리 산35-1번지	310	-	310	
E8-17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E8-18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E8-19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E8-20	E8	7,094	-	7,094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분할 또는 합병 지금
E8-21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E8-22					벌지리 산35-1번지	308	-	308	
E8-23					벌지리 산33-1번지	308	-	308	
E9-1	E9	5,476	-	5,476	벌지리 산33-1번지	316	-	316	분할 또는 합병 지금
E9-2					벌지리 산33-1번지	308	-	308	
E9-3					벌지리 산33-1번지	308	-	308	
E9-4					벌지리 산33-1번지	308	-	308	
E9-5					벌지리 719번지	308	-	308	
E9-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9-7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9-8					벌지리 산36번지	307	-	307	
E9-9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9-10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9-11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9-12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E9-13					벌지리 산36번지	321	-	321	
E9-14					벌지리 산36번지	313	-	313	
E9-15	E9	5,476	-	5,476	벌지리 산36번지	308	-	308	분할 또는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E9-16					벌지리 산36번지	284	-	284	합병금지
E9-17					벌지리 산36번지	285	-	285	
E9-18					벌지리 산36번지	262	-	262	
E10-1	E10	1,801	-	1,801	벌지리 산61-1번지	297	-	297	분할또는합병금지
E10-2					벌지리 산61-1번지	297	-	297	
E10-3					벌지리 산61-1번지	297	-	297	
E10-4					벌지리 산61-1번지	301	-	301	
E10-5					벌지리 산61-1번지	311	-	311	
E10-6					벌지리 산61-1번지	298	-	298	
E11-1	E11	5,727	-	5,727	벌지리 산61-1번지	281	-	281	분할또는합병금지
E11-2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3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4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5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6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7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8					벌지리 산36번지	293	-	293	
E11-9					벌지리 산36번지	280	-	280	
E11-1	E11	5,727	-	5,727	벌지리 산61-1번지	281	-	281	분할또는합병금지
E11-2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3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4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5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6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7					벌지리 산61-1번지	293	-	293	
E11-8					벌지리 산36번지	293	-	293	
E11-9					벌지리 산36번지	280	-	280	
E11-10					벌지리 산36번지	280	-	280	
E11-11					벌지리 산36번지	280	-	2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E11-12					벌지리 산36번지	285	-	285	
E11-13					벌지리 산36번지	285	-	285	
E11-14					벌지리 산36번지	285	-	285	
E11-15					벌지리 산36번지	285	-	285	
E11-16					벌지리 산36번지	285	-	285	
E11-17					벌지리 산61-1번지	285	-	285	
E11-18					벌지리 산61-1번지	285	-	285	
E11-19					벌지리 산36번지	280	-	280	
E11-20					벌지리 산61-1번지	280	-	280	

나)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다) 녹지용지(변경없음)

라)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형(변경)

가) 체육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A1	A1 A3	벌지리 산63-5번지	용 도	허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A2		벌지리 산36번지	용 도	허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나)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없음)

2) 주거형(변경)

가) 주거시설용지 → 주거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E1 ~ E11	벌지리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은 다산 샤인힐 컨트리클럽 지역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른다.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고령군청 도시건축과(☏ 054-950-67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329호

군위군 우보 나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군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도설치사업을 시행하여 하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생활하수 및 각종 오ㆍ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군위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군위군청)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면적(㎢)
우보 나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65-4번지외 3필지	396	70	FASBR 공법	0.18

다. 사업시행기간 : 2020~2022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마. 기타 관계서류는 군위군 맑은물사업소(054-380-79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계						439	396			
1	군위	우보	봉산	65-4	도	115	107		군위군	
2	군위	우보	봉산	64	도	175	144		군위군	
3	군위	우보	봉산	산3-4	도	108	104		군위군	
4	군위	우보	봉산	산3-3	도	41	41		군위군	
					이	하	여	백		

◈◈◈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2호

「경북 차세대 비면허대역 통신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취소 공고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게재한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604호(2020년 9월 17일 게재) 「경북 차세대 비면허대역 통신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고」 가 내부 정책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취소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3호

「경북 차세대 비면허대역 통신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취소 공고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전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게재한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605호(2020년 9월 17일 게재) 「경북 차세대 비면허대역 통신 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가 내부 정책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취소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5호

2020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054-420-8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내역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적공부			사방사업실행		토지사용내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사업명	면적(㎡)	사용기간	사용자재	주소	성명	
1	김천	조마	신왕	20	전	694	사방시설 보수·보완	242	2020. 10. ~ 2024. 12.31.	돌, 잔디 등	미등기	김용민	

경상북도 공고 제2020-1637호

기본측량실시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20년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의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4.

경 상 북 도 지 사

- 아 래 -

1. 측량의 종류 : 국가기본측량

2. 측량의 목적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3. 측량의 실시기간 : 2020.09.14. ~ 2020.12.22.

4. 측량의 실시지역 : 상주시 일원

5. 기타사항 : 관련사업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17)로 문의 바람.

◈◈◈

경산시 고시 제2020 - 175호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기정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0번지 일원

변경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0-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 명 칭 : 중로3-7호선, 소로1-88호선, 소로1-89호선, 소로3-401호선, 소로1-87호선, 경산서희소공원

3. 사업규모 : 기정 - A = 6,395㎡

변경 - A = 6,473㎡

가. 도로 : 기정 - A = 5,815㎡

변경 - A = 5,893㎡

○ 중로3-7호선: L = 183m, B = 0~3m (도로폭확장)

○ 소로1-88호선: L = 74m, B = 10m

○ 소로1-89호선: L = 139m, B = 10m

○ 소로3-401호선: L = 238m, B = 2~4m

○ 소로1-87호선: L = 198m, B = 10m

나. 공원(변경없음)

○ 경산서희소공원 : A = 5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기정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47길 37, 4층(중방동)

변경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20길 42, 2층(서상동)

○ 성 명 :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 대표 조광현

5.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4. 20.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지적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면적변경 및 사업기간변경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0. 9. 18.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경산시 홈페이지 참조

9.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번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지 목	편입면적 (㎡)	무상귀속 예정면적 (㎡)	소관청	비 고
계		1필		175.0	175.0		
1	경산시 중방동	802-99	도로	175.0	175.0	기획재정부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공사 완료 후 편입토지 및 시설물 모두를 사업시행자가 경산시에 무상귀속 함.

경산시 고시 제2020 - 176호

경산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4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 명 칭 : 기정 - 호남정유 대구저유소

변경 -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

3. 사업규모

○ 시설결정면적 : 기정 - 57,671㎡

변경 - 57,752㎡(증 81㎡)

○ 사업시행면적 : 기정 - 57,671㎡

변경 - 57,752㎡(증 81㎡)

- 건 축 면 적 : 기정 - 1,809.32㎡

변경 - 1,828.77㎡(증 19.45㎡)

- 건 축 연 면 적 : 기정 - 2,020.69㎡

변경 - 2,039.75㎡(증 19.06㎡)

- 유류저장탱크 : 24기(**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기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석운동)

○ 성명 : 기정 - 호남정유(주) 대표이사 허동수

변경 -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김운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청천역 철도부지 내 위치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토지소유·사용권 관계를 반영하여 대한송유관공사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자 함.

○ 시설의 설치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경계를 저유소 관련용도 시설에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시설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0. 9. 20.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경산시 홈페이지 참조

10.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공급시설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450번지 일원	57,671	증) 81	57,752	82.06.14 (대고 제54호)	-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	- 시설명 변경 기정) 호남정유 대구저유소 변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 - 시설 면적 증가 A=57,671㎡ → 57,752㎡ (증 81㎡)	- 시행자변경에 따른 시설명 변경 및 토지 분할 및 등록사항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를 반영하고자 함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별첨(게재생략)

경산시 고시 제2020 - 177호

경산도시계획(중방지구 시가지조성(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산도시계획(중방지구 시가지조성(2단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舊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24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기정 - 경산시 중방동 72-34번지 일원

변경 - 경산시 중방동 9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시가지조성사업

○ 명 칭 : 중방지구 시가지조성사업(2단계)

3. 사업규모

○ 시가지조성사업 결정면적 : 기정 - 145,957.4㎡

변경 - 146,086.9㎡(증 129.5㎡)

○ 기 시 행 면 적 : 122,134.4㎡(1단계, 1-1단계)

○ 금회신청면적 : 기정 - 23,823㎡

변경 - 23,952.5㎡(증 129.5㎡)

- 상 업 시 설 용 지 : 기정 - 8,632㎡

변경 - 8,678.2㎡(증46.2㎡)

- 근린생활시설용지 : 기정 - 9,996㎡

변경 - 9,997.4㎡(증 1.4㎡)

- 공 공 시 설 용 지 : 기정 - 5,195㎡

변경 - 5,276.9㎡(증81.9㎡)

• 도 로 : 기정 - 2,462㎡

변경 - 2,531.4㎡(증 69.4㎡)

- 소로1-57 : L = 14m, B = 10m
- 소로1-90 : L = 36m, B = 10m
- 소로2-298 : L = 206m, B = 8m

• 광 장 : 기정 - 2,733㎡

변경 - 2,745.5㎡(증 12.5㎡)

- 미관광장 : 기정 - 2,243㎡(기 조성)

변경 - 2,255.5㎡(증 12.5㎡)

- 중방광장 : 4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6동105호(수성동1가, 신세계타운)

○ 성명 : 중방지구 2단계 대표 임홍규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년 6월 30일까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실시계획 인가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계획 일부변경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0. 9. 20.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경산시 홈페이지 참조

9. 「舊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경산시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 공공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195	5,276.9	100.0	
광장	2,733	2,745.5	52.0	미관광장 1개소, 근린광장 1개소
도로	2,462	2,531.4	48.0	

- 도 로

규모				기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설치계획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m)	면적(㎡) 기 정	면적(㎡) 변 경
합계					256				256		2,462.0	2,531.4
소로	1	57	10	특수도로	14	소로1-90 중방동172-17	12호광장 중방동172-16	보행자전용도로	14	10	2,462.0	2,531.4
소로	1	90	10	국지도로	36	중로2-35 중방동182-5	소로1-57 중방동172-18	일반도로	36	10		
소로	2	298	8	국지도로	206	중로2-32 중방동72-38	중로2-34 중방동898	일반도로	206	8		

- 광 장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2개소				2,733.0	2,745.5	
12	미관광장	광장	중방동 172-16번지	중방동 899	2,243.0	2,255.5	
21	중방광장	근린광장	중방동 72-5번지	중방동 910	490.0	490.0	

성주군 고시 제2020-80호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539번지 일원의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성 주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미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2,306	-	32,306	1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성2	성주 성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539번지 일원	32,306	-	32,306	성주군고시 제2020-64호 (2020.7.9.)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2,306	-	32,306	100.0	
공업용지	공업시설용지	3,690	-	3,690	11.4	
유통용지	유통시설용지	19,319	증)290	19,609	60.7	
녹지용지	완충용녹지	6,299	감)290	6,009	18.6	
공공시설용지	도로	2,998	-	2,998	9.3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3,279	증)20	23,299		23,279	증)20	23,299	
A	1	3,960	감)270	3,690	성주읍 성산리 1545번지 일원	3,960	감)270	3,690	공업용지
B	1	19,319	증)290	19,609	성주읍 성산리 1539번지 일원	19,319	증)290	19,609	유통용지

※ A-1(공업시설용지) : 면적기입 착오 정정에 따른 변경(기정 - 3,960㎡ → 3,69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농산물가공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최저높이	-	
		형태		-	
		색채		◦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B	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외), 제7호의 판매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최저높이	-	
		형태		-	
		색채		◦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기타		-	

4) 교통처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방도 905호선에 접하는 대상지의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성주군청 도시건축과(☏054-930-6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김천시 공고 제2020-1910호

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김천시 부곡동 482-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과 관련 아파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4.

김 천 시 장

1. 신청 요지

가. 위 치 : 김천시 부곡동 482-1번지 일원(부곡동 자이아파트 우측 공동주택 부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 명　칭 : 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

다. 면적 및 규모

○ 도로

도로	규모		비고
	폭원(m)	연장(m)	
계 8개노선			
중로1- 17호선	25	200	
중로2- 40호선	15	243	
중로2- 41호선	15	238	
소로1- 81호선	10	171	
소로2-196호선	8	77	
소로2-197호선	8	51	
소로2-195호선	8	31	
소로2-198호선	8	37	

○ 어린이공원

시설명	면적(㎡)	비고
어린이공원-30	1,497	

○ 주차장

시설명	면적(㎡)	비고
주차장-13	694	

○ 녹지

시설명	면적(㎡)	비고
완충녹지-16	2,657	
경관녹지-3	2,278	

라. 사업기간 : 2020. 인가일로부터. ~ 2022.12.31.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3로 19, 404호(율곡동)

○ 성명 : ㈜부곡도시개발 대표 김경노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조서 : 게재생략

2. 열람기간 : 2020. 9. 24. ~ 10.20.(14일이상)

3. 열람장소 :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대곡동사무소

4. 관계서류는 게재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054-420-6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열 람 의 견 서

건 명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아파트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9.
의 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김천시장 귀하

영주시 공고 제2020 - 941호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재 공람 공고

1.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에 대하여 영주시 공고 제2018-196호(2018.3.5)로 공람공고 후 관련절차 이행 중 계획내용이 변경(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등)되어 재 공람공고하며,

2. 「도시개발법」 제7조 및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과 “사업인정” 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4일

영 주 시 장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1) 구 역 명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2) 위치/면적 :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 32,672㎡

나. 개발계획(안) 및 변경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2,672	100.0	
주거용지		19,593	60.0	
	공동주택용지	19,593	60.0	·1개 블럭
도시기반시설용지		13,079	40.0	
	도 로	2,100	6.4	·3개소
	주 차 장	1,354	4.1	·1개소
	공공공지	55	0.2	·1개소
	공 원	4,739	14.5	·2개소
	녹 지	4,011	12.3	·3개소
	보행자도로	820	2.5	·1개소
구역 외 도로	당초	159	-	·보도 설치(L=71m, B=2m)
	변경	1,056	-	·보도 설치(L=71m, B=2m) ·소로1-A 신설(L=156m, B=10m)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업 시행방식

1) 시행예정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4층)

2) 시행방식 : 사용·수용방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라.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1) 공람기간 : 2020년 9월 24일 ~ 2020년 10월 20일(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영주시 시청로 1)

마. 관계도서는 위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72)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은 이후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주시 휴천동	1	전	813	813	박상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농업협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2	영주시 휴천동	2	대	433	433	박상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농업협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3	영주시 휴천동	158-1	대	714	714	경상북도	-				
4	영주시 휴천동	160	대	770	770	박상호 외1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농업협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5	영주시 휴천동	161-1	전	648	85	이경우	영주시 하망동 330				
6	영주시 휴천동	1169	전	1,302	1,302	박상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04동 805호	춘양농업협동조합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76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7	영주시 휴천동	1169-1	임	7,348	7,348	박철우 외1인	영주시 남간로 71번길 46 102동 903호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12 101동 1501호	영주농업협동조합	영주시 구성로 25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영주시 휴천동	산1-1	임	10,998	10,509	박상호 외1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노업협 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9	영주시 휴천동	산1-3	임	9,830	9,779	박상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노업협 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10	영주시 휴천동	산1-5	임	238	238	김성희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노업협 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11	영주시 휴천동	산2-10	임	387	387	㈜에스제이산업개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23 오피스텔동 809호	서안동 노업협 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12	영주시 하망동	420-18	임	200	200	박상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노업협 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13	영주시 하망동	524-7	도	28	21	영주시	-				
14	영주시 하망동	524-24	임	73	73	박상호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14 1510동 1601호	서안동 노업협 동조합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계				33,782	32,672						

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내성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예천군수(건설교통과)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음리 545-5번지 일원 면적 : 18,074㎡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내성천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시설개요 : 도로확장 L=1,021m, B=12m(아스팔트 포장) - 토공 1식 / 배수관(D450) L=117m / 개거(1.0x1.0) L=342m / 가드레일(3m 1경간) 363경간 / 디자인휀스(H=1.2m) L=920m
점용 기간	2020년 9월 21일부터 영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내성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예천군수(건설교통과)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842-14번지 일원 면적 : 3,54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신음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시설개요 : 도로확장 L=265m, B=8.5(6.5)m(아스팔트 포장) - 토공 1식 / L형측구 L=402.5m / 개거(0.8x0.8) L=156m / 가드레일(3m 1경간) 89경간
점용 기간	2020년 9월 21일부터 영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내성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천시장(상하수도과)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1073-8번지 외 18필지 일원 면적 : 88㎡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긴방천 산책로 쉼터조성 시설개요 : 가로등(4m) 21본, CCTV 4기, 운동기구 4개소
점용 기간	2020년 9월 2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0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SK텔레콤(주) 대구네트웍본부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로 73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343-15번지 일원 면적 : 1.0㎡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시설개요 : 통신주(H=13.4M) 1주
점용 기간	당초 : 2015년 8월 26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변경 : 2020년 8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1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KT 구미지사장 주소 :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14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12-480번지 외100개소 일원 면적 : 9.0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시설개요 : 통신주 101본
점용 기간	당초 : 2015년 6월 26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변경 : 2020년 6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6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KT 칠곡지사장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64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1688-43번지 일원 면적 : 1.0㎡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시설개요 : 통신주 140본
점용 기간	당초 : 2015년 8월 27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 **변경 : 2020년 8월 27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97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금강로직스 대표이사 주소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763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1614-6번지 일원 면적 : 70㎡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골재채취 진입로 설치 시설개요 : 흄관 D=500㎜, L=10m
점용 기간	당초 :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변경 : 2019년 6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 - 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상북도	직위	경제진흥원장	성명	전창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446,928		
본인	답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212번지 413.00㎡	8,962		
본인	임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한탄리 311번지 4,440.00㎡	8,614 (8,614)		
본인	답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26-1번지 2,792.00㎡ 중 698.00㎡	17,729		
본인	답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210번지 1,322.00㎡	60,000 (60,000)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225-9번지 2,482.00㎡	53,859		
본인	임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 109번지 47,207.00㎡	22,235		
본인	임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 111-2번지 3,174.00㎡	2,133		
본인	전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93-6번지 390.00㎡	82,407 (25,000)		
본인	대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39-6번지 181.00㎡ 중 45.25㎡	41,657		
모	대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39-6번지 181.00㎡ 중 45.00㎡	41,427		
모	대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38-8번지 175.00㎡	54,320 (50,000)		
모	대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38-15번지 36.00㎡	16,020 (10,000)		
모	대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38-21번지 19.00㎡	10,000 (10,000)		
모	답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26-1번지 2,792.00㎡ 중 698.00㎡	17,729		
장남	전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229번지 932.00㎡	8,034		
장남	전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228번지 205.00㎡	1,802		

▶ 건물(소계)			2,957,500		
본인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건물 360.90㎡ 중 79.40㎡	27,2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2 건물 161.00㎡ 중 113.00㎡	1,758,400 (1,365,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2 건물 161.36㎡ 중 48.34㎡	753,600 (585,000)		
모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건물 36.69㎡	30,000 (20,000)		
모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성북구 선5가 118-8 건물 38.03㎡	60,000 (25,000)		
모	단독주택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리 건물 96.29㎡	68,300 (50,000)		
모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건물 35.70㎡	70,000 (60,000)		
모	상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건물 40.50㎡	60,000 (50,000)		
모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건물 360.90㎡ 중 119.10㎡	60,000		
모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성북구 선5가 118-8 건물 49.93㎡	70,000 (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38,00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제너시스 배기량(3,800cc)	38,000 (38,000)		
▶ 예금(소계)			1,318,682		
본인		(주)KEB하나은행 1,524, NH투자증권 21,965, 교보생명보험 32,080, 국민은행 6,522, 미래에셋대우(주) 1,001, 산림조합중앙회 50,000, 삼성생명보험 84,407, 삼성증권 171,92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2,163, 신한은행 7,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8,391, 우리은행 21,057, 웰컴저축은행 20, 케이프투자증권(구)LIG투자증권 9,934, 한국카카오은행(주) 400, 한국투자증권 813, 현대해상화재보험 390	452,596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21,600, 국민은행 25,477, 미래에셋생명보험 13,774, 삼성증권 99, 새마을금고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21,512, 신한은행 64, 우리은행 122, 유안타증권 265, 한국투자증권 8,29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796, 현대해상화재보험 470	594,472		
모		농협은행 5, 농협중앙회 40,344, 산림조합중앙회 1,083, 삼성생명보험 226,000	267,432		
장남		(주)KEB하나은행 3, 국민은행 114, 신한은행 496, 우리은행 140, 중소기업은행 10, 케이프투자증권(구)LIG투자증권 4	767		
차남		NH투자증권 245, 우리은행 1,772, 중소기업은행 1,398	3,415		
▶ 증권(소계)			**363,237**		
본인	상장주식	SCHWAB US BROA 5주, 메디젠휴먼케어 500주, VANGUARD EMERG 8주, LG유플러스 1,800주, ISHARES MSCI A 20주, ISHARES MSCI H 14주, 인스코비 300주, 삼성중공업 2,658주, ISHARES MSCI J 6주, DGB금융지주 3,000주, 진에어 8주, 아이랑놀기짱 41,562주, ISHARES MSCI G 15주, ABERDEEN PHYSI 59주, ISHARES 20+Y T 12주, VANGUARD TAX-E 11주, ISHARES IBOXX 5주, 현대차 1,250주, 한컴MDS 1,100주, 현대비앤지스틸 1,500주, VANGUARD FTSE 13주, VANGUARD SHORT 11주, ISHARES MSCI C 14주, LG전자우 1,266주, SKC 200주, ISHARES MSCI U 13주, 카카오 350주	357,875		
장남	상장주식	인스코비 1,000주	2,035		
차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11주, 현대차 28주	3,327		
▶ 채권(소계)			**1,500,000**		
본인	-	기타	750,000		
배우자	-	기타	750,000		
▶ 채무(소계)			**528,711**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2	400,000		
본인	금융채무	대구은행 38,711	38,711		
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성북구 선5가 118-8 2건	90,000		
총 계			**6,095,636**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